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재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8

발의연월일: 2020. 8. 25.

발 의 자: 박재호·전재수·최인호

김정호・한병도・김수흥

위성곤 · 정춘숙 · 이상헌

이해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, 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,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,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소요 되는 자금을 국가나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없거나 환승·연계시스템이 있더라도 중증장애를 가진 교통약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,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외에 운영에 관한 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3항 및 제6항).

법률 제 호

###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6조제3항 중 "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"을 "관할"로,
"설치할 수 있다"를 "설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제
2항"을 "제2항 및 제3항"으로, "설치"를 "설치·운영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	제16조(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	③
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	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	<u>관할</u>
<u>관할</u> 행정구역 내의 시장·군수	
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	
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	
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	
설치할 수 있다.	설치하여야 한다.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 또는 도(道)는 제1항에	6
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	
는 <u>제2항</u> 에 따른 이동지원센터	<u>제2항 및 제3항</u>
의 <u>설치</u> 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	<u>설치·운영</u>
부를 지원할 수 있다.	<b>.</b>
⑦・⑧ (생 략)	⑦·⑧ (현행과 같음)